

NEWSLETTER 918

Jan 16, 2024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 담보제공 생략자 확인내역 변경신고서에 업체 기본정보 추가 -

관세청은 담보제공 생략자 확인내역 변경신고서에 업체 기본정보를 추가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를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주요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사유

- 담보제공 생략자 확인내역 변경신고 시 업체 기본정보를 추가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를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II. 주요 개정내용

- 담보제공 생략자가 확인받은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담보제공 생략자 확인내역 변경신고서에 업체 기본정보 추가
 - 별지 제3호 서식(담보제공 생략자 확인내역 변경신고서)

현 행	개 정 안																																								
<p>■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별지 제3호서식)</p> <p style="text-align: right;">[처리기간 : 즉시]</p> <p>표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담보제공 생략자 확인내역 변경신고서</p> <table border="1"> <tr> <td>요건 변경사항</td> <td>담보제공 생략자</td> <td>「관세법」 [] 「항금특례법」 [] 위반 장산·파산·회생절차 개시 [] 부포탈당 [] 물품실신고인 지경 [] 관세채권 확보 곤란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td> <td>관세 등 고세 [] 과태료·과징금 [] 체납 신용평가등급 기쁨이탈 [] 관세채권 확보 곤란 []</td> </tr> <tr> <td>요건 외 변경사항</td> <td>구 분</td> <td>변 경 전</td> <td>변 경 후</td> </tr> <tr> <td></td> <td>관할지 세관</td> <td></td> <td></td> </tr> <tr> <td></td> <td>사업자등록번호</td> <td></td> <td></td> </tr> <tr> <td></td> <td>기 타</td> <td></td> <td></td> </tr> </table> <p>「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담보제공 생략자 확인내역 변경내용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고 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세 관 장 귀 하</p> <p>1. 위임장(위임의 경우에 한함)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세관장의 확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로 제출) 3.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p> <p>본인등 이 전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세관장이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210mm×297mm(외판용지 80g/제4호용종)</p>	요건 변경사항	담보제공 생략자	「관세법」 [] 「항금특례법」 [] 위반 장산·파산·회생절차 개시 [] 부포탈당 [] 물품실신고인 지경 [] 관세채권 확보 곤란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	관세 등 고세 [] 과태료·과징금 [] 체납 신용평가등급 기쁨이탈 [] 관세채권 확보 곤란 []	요건 외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관할지 세관				사업자등록번호				기 타			<p>■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별지 제3호서식)</p> <p style="text-align: right;">[처리기간 : 즉시]</p> <p>표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담보제공 생략자 확인내역 변경신고서</p> <table border="1"> <tr> <td>요건 변경사항</td> <td>담보제공 생략자</td> <td>「관세법」 [] 「항금특례법」 [] 위반 장산·파산·회생절차 개시 [] 부포탈당 [] 물품실신고인 지경 [] 관세채권 확보 곤란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td> <td>관세 등 고세 [] 과태료·과징금 [] 체납 신용평가등급 기쁨이탈 [] 관세채권 확보 곤란 []</td> </tr> <tr> <td>요건 외 변경사항</td> <td>구 분</td> <td>변 경 전</td> <td>변 경 후</td> </tr> <tr> <td></td> <td>관할지 세관</td> <td></td> <td></td> </tr> <tr> <td></td> <td>사업자등록번호</td> <td></td> <td></td> </tr> <tr> <td></td> <td>기 타</td> <td></td> <td></td> </tr> </table> <p>「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담보제공 생략자 확인내역 변경내용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고 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세 관 장 귀 하</p> <p>1. 위임장(위임의 경우에 한함)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세관장의 확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로 제출) 3.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p> <p>본인등 이 전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세관장이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210mm×297mm(외판용지 80g/제4호용종)</p>	요건 변경사항	담보제공 생략자	「관세법」 [] 「항금특례법」 [] 위반 장산·파산·회생절차 개시 [] 부포탈당 [] 물품실신고인 지경 [] 관세채권 확보 곤란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	관세 등 고세 [] 과태료·과징금 [] 체납 신용평가등급 기쁨이탈 [] 관세채권 확보 곤란 []	요건 외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관할지 세관				사업자등록번호				기 타		
요건 변경사항	담보제공 생략자	「관세법」 [] 「항금특례법」 [] 위반 장산·파산·회생절차 개시 [] 부포탈당 [] 물품실신고인 지경 [] 관세채권 확보 곤란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	관세 등 고세 [] 과태료·과징금 [] 체납 신용평가등급 기쁨이탈 [] 관세채권 확보 곤란 []																																						
요건 외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관할지 세관																																								
	사업자등록번호																																								
	기 타																																								
요건 변경사항	담보제공 생략자	「관세법」 [] 「항금특례법」 [] 위반 장산·파산·회생절차 개시 [] 부포탈당 [] 물품실신고인 지경 [] 관세채권 확보 곤란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	관세 등 고세 [] 과태료·과징금 [] 체납 신용평가등급 기쁨이탈 [] 관세채권 확보 곤란 []																																						
요건 외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관할지 세관																																								
	사업자등록번호																																								
	기 타																																								

III. 시행일자

○ 2024. 1. 1.

첨부파일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붙임2]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대비표

[붙임3]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전문

| Contact



안성호 관세사

T 02-6011-3048
E shahn@esein.co.kr



노규현 관세사

T 070-4353-6972
E ghnoh@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4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